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32
----------	------------

제안년월일: 2022년 2월 11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일부개정조례안 금년 1월부터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급수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월 $300m^3$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월 $300m^3$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안 제31조제1항제8호)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다만,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다만,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의 적용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납기분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